

[별표 1] <개정 2000.3.31, 2001.4.3, 2003.1.25, 2004.1.26, 2004.3.30, 2005.3.11>

미 가 공 식 료 품 분 류 표

구 분	관세율 표번호	품 명
1. 곡 류	1001	①밀과 메슬린
	1002	②호 밀
	1003	③보 리
	1004	④귀 리
	1005	⑤옥수수
	1006	⑥쌀(벼를 포함한다)
	1007	⑦수 수
	1008	⑧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1101	⑨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1102	⑩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다)
	1103	⑪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1104	⑫기타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빵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1106	⑬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건조한 채두류(관세율표 제0713호의 것)의 분과 조분
2. 서 류	0714	①매니옥, 칩뿌리·살렘·국아·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르거나 펠리트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교야자의 수
	1106	②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사고·뿌리 또는 괴경(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분과 조분
	0701	③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105	④감자의 분·조분과 플레이크
3. 특용작물 류	0901	①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커피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제외한다) 및 커피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0902	②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제외한다)
	0904	③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캡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
	1201	④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2	⑤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과실류		⑥내지 ⑧ <삭제 1991.3.5.>
	1206	⑨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7	⑩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암넛과 핵·면실·피마자·잇꽃씨·양귀비씨를 제외하며,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8	⑪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1212	⑫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사탕무우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1	⑬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인삼류
	1801	⑭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에 한한다)
	1802	⑮코코아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2401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0910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생강
	0801	①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2	②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3	③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4	④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카도우·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5	⑤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6	⑥포도(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7	⑦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과과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8	⑧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9	⑨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0	⑩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1	⑪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찢 것 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0812	⑫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혹은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813	⑬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5. 채소류	0702	①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3	②양파·쪽파·마늘·부추와 기타 과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4	③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5	④상치(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6	⑤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우 뿌리·선모·세러리아크·무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7	⑥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8	⑦채두류(꼬투리의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것에 한한다)
	0709	⑧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10	⑨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한다)
	0711	⑩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 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712	⑪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0713	⑫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수축류	0101	①말(경주말·승용말 및 종마를 제외한다)·당나귀·노새와 버새
	0102	②소(물소를 포함한다)
	0103	③돼 지
	0104	④면양과 산양
	0105	⑤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0106	⑥기타의 산 동물(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7. 수육류	0201	①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2	②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	③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4	④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5	⑤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	⑥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	⑦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8	⑧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9	⑨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아니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8. 유란류	0210	⑩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0504	⑪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511	⑫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건·근과 원피의 웨이스트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506	⑬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401	①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0402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0407	③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9. 생선류	0408	④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1901	⑤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육아용조제분유에 한한다.
	0301	①활어 (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
	0302	②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3	③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4	④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5	⑤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6	⑥갑각류(껍데기가 붙어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7	⑦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0511	⑧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어류의 웨이스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10. 패 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

		복과 기타의 패류(산 것과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김·미역·툇·파래·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12. 기타	0409	①천연꿀
식용에 공	0410	②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하는 농산	1212	③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
물·축산물		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수산물·		(산채류를 포함한다)
임산물과	2501	④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소금
단순가공식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
료품		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
		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09	⑥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채소종자
		⑦쌀에 인삼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을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쌀전분
		의 호화(糊化) 정도가 40퍼센트 이하인 것